

산학협력단 법인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271번지에 둔다.

제4조(산학협력단의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업무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4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5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<신설>
7. 산학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·훈련<신설>
8. 그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③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제조업(방송물, 영상물, 공연물, 옥외광고물, 출판, 광고물)등에 관한 사업
2. 서비스업(교육서비스, 여행, 이벤트)등에 관한 사업
3. 부동산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
4. 건설업에 관한 사업
5. 영화제작 및 배급에 관한 사업
6. 출판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에 관한 사업<2009.3.11>
7. 문화상품·공예품·한지사제품 제조·판매에 관한사업<2009.6.10>

제5조(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)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부설연구소: 본교에 설치된 협력연구소.
2.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.

제2장 조직

제6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7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,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.

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행정사무)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행정부서에는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·감

독한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④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, 연구원,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
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·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.

제3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재산의 종류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
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, 기부금 또는 보조금

제11조(회계)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법령 또는 산학협력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따로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경비)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운용수익
2. 출연금·기부금·보조금
3. 사업수익
4. 차입금

제13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14조(회계연도)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 연도와 같다.

제4장 보칙

제15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제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정관의 변경) 총장은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.

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가.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

나.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

다.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

항

② 공고방법은 전북지역 신문으로 한다.

제19조(설립당초의 임원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임 기	주 소
이사	장석기	1950. 8. 22.	2년	전북 익산시 남중동 370-1 신일@ 2동 706호

부 칙(2003. 10. 1)

제1조 본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2003년 10월 1일로 한다.

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2. 제3조 2(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의 종류) 정관은 2004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3. 제3조 2(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의 종류) 정관은 200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4조③(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의 종류) 정관은 200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6. 10)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